#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35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서영교·최형두·이성만

윤재갑 • 신정훈 • 김병기

전혜숙 · 오영환 · 윤준병

이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의 조세 특례제도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 어촌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조세특례의 연장과 비과 세되는 예탁금의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예탁금의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농

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 5,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24년"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을 각각 "202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을 "2026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2020년"을 "2024년"으로, "2021년"을 각각 "202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을 "2026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u>2020년</u> 12월 31일 이전	<u>2024년</u>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5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1년</u> 1월 1일부터 <u>2021년</u>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 100분의 5
- 2. <u>2022년</u>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u>3천만원</u>

	<u>2024</u>
<u>년</u>	
1 000513	000513
1. <u>2025년</u>	
2. <u>2026년</u>	
	-
1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5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u>202</u> 4	<u>1년</u>
	<u>2</u>
<u>025년2025년</u>	
② <u>2026년</u>	